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5
----------	-----

2019년 3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태성 의원 외 11명
- 나. 제안일 : 2018년 10월 25일
- 다. 회부일 : 2018년 10월 28일
- 라. 상정일 :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충분히 소비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급활성화와 학교급식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19. 1. 04. ~ 1. 1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를 신설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식습관 및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의 소비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인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에서 우선 구매하여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은 2011년 시작해 2019년에는 초·중·고3을 대상으로 1,295개교 72만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재정을 분담(30:50:20)하여 5,261억 9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자치구 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1개 학년씩 확대하여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

< 2019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편성 현황 >

(단위:백만원)

소계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526,197 (100%)	147,876 (28.1%)	113,071 (21.5%)	265,250 (50.4%)

< 2018년 9월기준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

	학 교 수(교)				학 생 수(명)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1,356	12	969	375	904,056	5,199	652,826	246,031

〈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경위 〉

- 2010. 8. 2011학년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 계획 수립
- 2011. 3. 공립초 1~3학년 지원(교육청) 공립초 4학년 지원(21개 자치구)
- 2011.11. 공립초 5~6학년 지원(서울시), 공립초 4학년 지원(4개 자치구)
- 2012. 3. 공립초, 중1학년 지원
- 2013. 3. 공립초, 중1~2학년 지원
- 2014. 3. 공립초, 중1~3학년 지원
- 2016. 3. 공립초, 중학교 전체, 초등인가 대안학교(지구촌학교) 지원
- 2017. 9. 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 시행
- 2018.11. 급식대상 확대를 위한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식

○ 강서·서초·강동 등 11개 자치구에서 곡류, 엽채류, 과수 등 6,910톤의 작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각종 검사를 마친 우수한 식재료는 학교 급식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 2018년 서울시 관내 농산물 생산 현황 〉

구 분	계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농산물생산량 (톤)	6,910	1,629	4,603	678	3,850(천본)	-

〈 2018년 자치구별 농작물 재배면적 현황 〉

구 분	합계(ha)	작목별 재배면적(ha)					주요 재배작물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계	1,084	338	624	30	47	45	
종로구	2		2				- 엽채·과채류
중랑구	3			3			- 배
도봉구	13	1	11	1			- 엽채류
노원구	12		6	6			- 배
은평구	15		3			12	- 관상수재배
양천구	4		4				- 엽채류
강서구	366	335	23	0	4	4	- 벼
서초구	366		332	1	20	13	- 엽채류, 국화 등
강남구	80		66	1	5	8	- 엽채류
송파구	38	2	28	2	2	4	- 엽채류
강동구	185	-	149	16	16	4	- 엽채류

〈 서울시 농지 분포 현황 〉



○ 학교는 식재료를 다양한 방법(전자조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직거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등)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을 의무화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인 서울시 생산 식재료는 학교급식에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 낙찰 하한율 ① 2천만원 이하 예정가격의 90%이상, ② 2~5천만원은 88%이상 적용

※ 5천만원이상 2억1천만원이하 공동구매 또는 분기단위 입찰시 는 ‘적격심사 낙찰’

※ 학교의 식재료 구매 방법

가. 비대면 전자조달 및 전자계약 원칙

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조달
다. 학교급식지원센터(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를 이용한 조달

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

계약형태	추정가격 범위	구매방법
입찰	5천만원 초과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	2인 이상견적, 전자조달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생산자 직거래 등

1) 서울시 교육청, ‘2019 학교급식 기본방향’

- 따라서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본 개정안을 통해 관내 생산 농산물의 이용 촉진과 함께 관내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안 제8조의 ‘친환경 지역농산물’은 곡류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의 농가는 곡류 뿐 아니라 채소 및 과수 등도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의 비용추계는 곡류로만 한정되어 있어, 적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 내역 발취 >

○ 추계의 전제

-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중 쌀 이외의 채소류 등은 추계에서 제외하고 생산물량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

○ 총비용(합계) ≙ 390,405천원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78,081	78,081	78,081	78,081	78,081	390,405
□ 총 비용(b-a)		78,081	78,081	78,081	78,081	78,081	390,405

○ 세부산출내역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예산액
	합 계	78,081천원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친환경쌀 공급차액 : [66,000원(관내 생산 친환경쌀 시장가) - 40,780원(18년 정부 고시가)] × 3,096포 (20KG 단위, 18년 생산량) =78,081천원	78,081천원

- 최근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관내 생산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생산자 직거래, 학교급식지원센터(동대문, 성북, 노원, 은평, 성동 등 5개 자치구 운영 중)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25일

발 의 자 : 이태성, 유 용, 채인묵,
김생환, 김용석, 안광석,
박순규, 이광호, 권수정,
이상훈, 신정호, 이정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등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충분히 소비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급활성화와 학교급식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1조를 제9조부터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8조(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u> 시장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u>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u>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u>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u>	<u>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u>
<u>제8조의2(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u>	<u>제10조(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u>
<u>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u>	<u>제11조(친환경유통센터)</u>
<u>제8조의4(위생·안전 점검)</u>	<u>제12조(위생·안전 점검)</u>
<u>제9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u>	<u>제13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u>
<u>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u>	<u>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u>
<u>제11조(지도 감독 등)</u>	<u>제15조(지도 감독 등)</u>

○ 세부산출내역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예산액
합 계		78,405천원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 친환경쌀 공급차액 : [66,000원(서울시 관내 생산 친환경쌀 시장가) - 40,780원('18년 정부 고시가)]×3,096포 (20KG 단위, '18년 생산량) = 56,400천원 = 78,405천원	78,405천원

주: '18년 생산(예상)량 산정은 '17년 재배면적당 산출량을 고려하여 추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